KOREA EXPO EXPO 참가 신청서(계약서)



2014. 12. 18(목) ~ 19(금) 코엑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32 나라빌딩 6층 전화: 02-567-5311, 팩스: 02-2051-3319 E-mail: lee@keoa.org, help@keoa.org

http://www.keoa.org

1. 신청 및 계약자

업체명 (사업자등록기준)	한글:				
	영문 :				
대표자					
주 소	(_)				
담당자		소속 및 직위			
핸드폰		E-mail	()	
전 화		FAX	()	
홈페이지					
주요전시품목					

2. 전시공간 신청

구 분	신 청 내 역	단 가 (원)	금 액 (VAT별도)	
기본부스	() Booth(s)	1,300,000	원	
독립부스	() Booth(s)	900,000	원	

^{*} 부스단위: 1부스(3m x 3m = 9m²)이며 독립부스는 두개의 부스 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참가비납부: 한국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(630-008042-954) / 예금주: 한국전시주최자협회
-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(첨부참조)을 수락하고 계약금(참가비의 50%)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, 상기와 같이 KOREA EXPO EXPO에 참가 계약을 신청합니다.
- 8월 24일 이후에는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	참	가	업	체			주 최 자				
			년		월	厄			년	월	일
계약담당자 :						(인)	계약담당자 :				(인)
대표자 :						(인)	대표자 :				(인)

[※] 본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참가업체 및 주최자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 내용을 이행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한다.

[※] 참가신청(계약)과 주최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체결로 인정하며 참가신청 취소시 참가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약금이 적용된다.

전시회 참가(계약)규정

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1.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, 회사,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.
- 2. "전시회"라 함은 KOREA Exhibition EXPO (한국전시산업전)을 말한다.
- 3. "주최자"라 함은 (사)한국전시주최자협회를 말한다.

제2조 (참가신청 및 계약)

- 1.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 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의 50%를 납부함으로 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2.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"전시회"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.

제3조 (전시면적 배정)

- 1. 주최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.
- 2.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 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4조 (전시실 관리)

- 1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,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(Booth)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2. 전시자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 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주최자의 허락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 -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.
- 3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4.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명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5.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, 천정,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 (납입조건)

- 1. 전시자는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 내 납입해야 하며, 잔금은 전시개최 90일 전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.
- 2.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.

제6조 (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)

- 1.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납 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2.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개시 90일 이전에 주최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기 납부된 참 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3.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 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 야 한다. 단,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, 부족시 추가 납 입하여야 하고, 잉여시 반환한다.

- 2013년 9월 13일 이전 취소: 참가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- 2013년 9월 25일 이전 취소: 참가비의 80%를 위약금으로 납부- 2013년 9월 25일 이후 취소: 참가비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

제7조 (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)

1.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 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
다만,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8조 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
- 1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 만약, 설치 기간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.
- 2.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전시장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.

제9조 (전시품 및 장치물 진열)

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,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지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전시장내 경비, 위험부담, 도난 및 보험)

- 1.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- 2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- 3.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, 전시품 및 진행요원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.

제11조 (방화규칙)

- 1.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.
- 2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누전. 방화 및 화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제12조 (보충규제)

- 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.
- 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분쟁해결)

1.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,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Signature : _____

